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6 - 51 - 191호
(사건번호 : 201607조사126)

안 건 명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영업 관련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빌딩
대표이사 권영수

의결연월일 2016. 9. 7.

주 문

1.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약관에, 법인영업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법인용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인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이하 '소매월경 판매'라고 한다)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약관에 신설할 규정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은 법인영업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점 및 판매점이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인영업 조직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매월경 판매 등을 통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9.까지(10일간) 피심인 본사의 법인영업 및 법인영업대리점의 영업에 대하여 번호이동을 포함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는 신규가입 관련 제안서 제출 및 예약가입자 모집, 가입신청서 접수,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일체의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알뜰폰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제외)를 포함한다.
7. 피심인은 제1 내지 6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8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1,506천명으로 전체시장의 20.5%('15.12월말 기준)를,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은 5조 2,062억원('15.12월말 기준)으로 전체시장의 21.0%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11,506 (20.5%)	52,062 (21.0%)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포함

나. 이동통신시장 현황

- (총 개통가입자) '16.1.1.~6.30.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총 개통가입자 수는 9,999천명이며, 그 중 010신규 2,515천명, 번호이동 2,633천명, 기기변경 4,851천명이었다.

< 이동통신 총 개통가입자 현황(단위 : 천명, %) >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체가입자		9,999	1,599	1,583	1,779	1,752	1,687	1,599
가입 유형	010신규	2,515 (25.2)	388 (24.3)	436 (27.5)	515 (28.9)	430 (24.5)	391 (23.2)	355 (22.2)
	번호이동	2,633 (26.3)	433 (27.0)	421 (26.6)	435 (24.4)	453 (25.8)	455 (27.0)	437 (27.3)
	기기변경	4,851 (48.5)	778 (48.7)	726 (45.9)	829 (46.6)	870 (49.6)	841 (49.8)	807 (50.5)

* 수치 : 일일개통 마감시간 집계 기준 / M2M(Machinne to Machinne), 선불PPS(Pre-Paid Service) 제외

- (번호이동 가입자) '16.1.1.~6.30.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총 가입자 수는 2,633천명이며, 사업자별로는 SKT(1,023천명) → KT(836천명) → 피심인(774천명) 순이었다.
- (번호이동 순증감) '16.1.1.~6.30.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은 피심인(24.8천명) → KT(-4.5천명) → SKT(-20.3천명) 순이었다.
- o (법인영업 가입자) '16.1.1.~6.30.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법인영업 가입자 수는 672천명이며, SKT(306천명) → KT(194천명) → 피심인(172천명) 순이었다.

* '법인영업'이란 기업내 다수고객(제한된 공간·고객)을 대상으로 일괄 입찰 또는 특판방식을 통해 영업하는 형태를 말함

- (법인영업 가입자 비중) 이동통신 3사의 자사 전체가입자 대비 법인영업 가입자 비중은 KT(7.6%) → 피심인(7.1%) → SKT(6.6%) 순이었다.
- o (이동통신단말장치 평균 장려금 수준) '16.1.1.~6.30.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주력 3개 이동통신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기종에 대한 평균 장려금 수준은 33.7만원이며, KT(34.0만원) → 피심인(33.8만원) → SKT(33.4만원) 순이었으며,
- (스팟성 장려금 수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에 대한 스팟(Spot)성 장려금 수준은 41.9만원이며, 피심인(42.8만원) → KT(42.4만원) → SKT(40.6만원) 순이었다.

* 스팟성 장려금 : 사업자별 주력 단말기 3개 기종의 일일 최고값에 대한 평균값임

* 단말기 평균 장려금 및 스팟성 장려금은 법인영업 부분을 포함한 전체시장에 관한 것임

다. 조사 경위

- '16년 1월 시장모니터링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추가로 100분의 15를 더한 금액보다 더 많은(즉 그 금액을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과열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동통신 3사('16.2.15.~3.14.) 및 KT·피심인 2사('16.3.15.~5.25.)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 피심인·KT 2사에 대한 실태점검 도중에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법인영업 부문에서 소매월경 판매 등을 통해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현저하여 '16.6.1.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하였으며,
- * '소매월경 판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인영업에 공급되어야 할 단말기들이 일반 개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소매영업(판매점 등)에 제공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함
- '16.1.1.~5.25. 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법인영업이 소매월경 판매를 통해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건수는 피심인(1,546건) → SKT(28건) → KT(11건) 순이었다.

< 법인영업의 소매월경 판매를 통한 과다지원금 지급 내역(단위 : 건, 만원) >

구 분	법인영업 대리점의 소매월경 판매			과다지원금 지급	
	대리점 수	건수	장려금수준	건수	지급수준
SKT	1개	28	40	28	21
KT	1개	11	40	11	20
피심인	18개	2,252	40(평균)	1,546	25(평균)

- 또한, 법인영업 대리점이 일반개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소매영업 코드를 함께 보유하고 소매월경 판매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대리점 수는 피심인 26개점 → SKT 8개점 → KT 1개점으로 나타났다.
- * 법인영업 대리점이 고액 장려금으로 일반소매에 끼어들 경우 ①과다지원금으로 활용될 우려와 ②일반 소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6.1.1.~6.30.) 중 피심인 본사와 불법행위 신고·제보를 받은 유통점 59개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대상 유통점 구성(단위 : 개점) >

구 분	대리점	판매점	계
조사대상 유통점	37	22	59

- 가입자 표본은 피심인 법인영업 총가입건수 171,605건 중 소매월경 판매 4,290건(약 2.5%)이며, 가입유형별로는 신규가입 2,780건(번호이동 2,250건, 010신규 530건)과 기기변경 1,510건이다.

< 가입유형별 조사표본 구성(단위 : 건) >

구 분	신규		기기변경	합계
	번호이동	010신규		
조사표본	2,250	530	1,510	4,290

나. 행위사실

(1) 과다지원금 지급

-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대상 유통점에서 피심인 법인영업 장려금을 활용하여 ①일반소매, ②도도매*, ③온라인밴드*, ④통신판매(TM)·방문판매·다단계 방식으로 소매월경 판매한 4,290건의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 '도도매'란 중계 판매점의 형태로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정책과 단말기를 다른 여러 판매점에 재위탁하여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함

* '온라인밴드'란 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네이버(Naver)가 출시한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밴드(Band)를 통해 스마트폰 판매를 제안하는 영업 방식을 말함

- 56개 유통점 3,716건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공시 지원금의 100분의 15 추가 지원금 범위를 평균 192,467원 초과하여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초과금액을 가입유형별로 보면 번호이동 2,112건(232,619원), 010신규 389건(134,338원), 기기변경 1,215건(141,417원)으로서 과다지원금이 번호이동 가입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유형별 위반건수 및 과다지원금(단위 : 건, 원) >

구 분	합계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010신규	
조사대상건수	4,290	2,250	530	1,510
위반건수	3,716	2,112	389	1,215
과다지원금	192,467	232,619	134,338	141,417
위 반 율	86.6%	93.9%	73.4%	80.5%

- 과다지원금이 지급된 판매형태별로는 일반소매 2,653건(183,887원), 도도매 174건(340,179원), 온라인밴드 294건(219,773원), 통신판매(TM)·방문판매·다단계 595건(173,981원)으로 나타났다.

< 소매판매 형태별 위반건수 및 과다지원금(단위 : 건, 원) >

구 분	합계	일반소매	도도매	온라인밴드	통신판매(TM)·방문판매·다단계
위반건수	3,716	2,653	174	294	595
과다지원금	192,467	183,887	340,179	219,773	173,981

< 법인영업의 소매월경 판매 과다지원금(현금대납) 지급사례 일부 예시 >

[illegible]

(2)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 피심인의 '16.1~6월 기간 중 주력 3개 단말기 기종에 대한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을 합한 이동통신 전체시장 평균장려금 지급 수준은 33.8만원이었다.
- 피심인의 법인영업 부서가 '16.1월~6월 기간 중 소매월경 판매 가능성이 높은 소형특판* 영업 대리점에 갤럭시7_64, 아이폰6S_64, LG-G5 등에 대한 단말기 장려금을 지급 수준을 최고 37만원에서 45만원까지 높게 책정·하달함으로써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소형특판'이란 ①방문판매, ②월 10건 이상의 소기업 임직원 판매, ③다단계 판매 등을 총칭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소매월경 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위 기간 중 법인영업 전체가입자(171,605) 중 53,516명(31.2%)은 피심인의 소형특판 장려금 정책을 통해 개통되었고, 이들에게 실 지급된 평균 장려금 수준은 도도매 47.8만원, 일반소매 39.8만원, 방문판매 35.6만원, 온라인밴드 34.9만원으로서, 위 전체시장 장려금 수준에 비하여 높았으며,

< 피심인 법인영업 정책별 가입자 및 비중(단위 : 명, %) >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법인영업 전체	171,605	24,828	27,084	29,518	32,489	38,029	19,657
소형특판	53,516	4,339	9,594	11,272	12,660	14,211	1,440

- 소형특판 가입자(53,516명) 중 45,592명(85.2%)에서 기업사원증 구비절차 없이 개통된 것으로 나타나 피심인의 소매월경 판매 관리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 OO대리점의 소매월경 및 불법 회피요령 판매점에 전달사례 일부 예시 >

4월 16일~						4월 16일 16시 이후 5주				
특판B						적용오염명 \$특가(세당가)				
서류상단에 (A정책) 필히 기재바랍니다. 요금제 미유지 -11 (D+93일 유지) 부가서비스 미유지 -2 (D+93일 유지) 신규 / 정책기변 -3 현금대출시 현금입금 or 상계금액까지 지전 R/B로 세금액상서 발행 (필수) 본사해피콜시 질곡경대병함착함이라 경대병함에서 구매했다고 용대 및 진화발기함을라고 하시고 진화통화 안하시면 합니다.						아이폰6S+	43	1.최저가 \$59.9 이상인 제품 (단, \$특가는 동등정책하에)		
						아이폰6S.6S+	45			
						G930(64)	42	2.국책상품주요		
						G935(64)	42			
						N920(64)	42	3.국책정책 \$특가/보통상품/신약/중간년월 한정적임		
						F700	40			
						F600	40	4.특가제품업자 10시 - 19시		
						F500	40			

유형		선택약정	MNP		재가입	
요금제	자감		50.9	59.9	50.9	59.9
아이폰6S/6S+ (16G/64G)	자감없음	35	39	27	31	
(93+16G일 새로)						
G930(32G/64G)	자감없음	35	39	27	31	
G935(32G/64G)	자감없음	35	40	27	32	
N920(32G)	노트S(32G)	35	39	27	31	
G920(64G)	갤6(64G)	33	37	25	29	
A510	A5(8)	34	34	24	24	
F700	G5	35	38	26	29	
F600	V10	35	39	27	31	

5월 10일 ~					
모델명	뱃네임	출고가	New음성무한59.9이상 LTE800이상		
			010	MNP	재가입
SM-G930L	갤럭시S7_32	836000	42	42	30
SM-G930L64	갤럭시S7_64	880000	42	42	30
SM-G935L	갤럭시S7엡지_32	924000	42	42	30
SM-G935L64	갤럭시S7엡지_64	968000	42	42	30
LG-F700L	G 5	836000	44	44	31
SM-A310N0	갤럭시 A3	352000	48	48	22
SM-A510L	Galaxy A5	528000	42	42	26
SM-A710L	Galaxy A7	599500	40	40	24

< 피심인 법인영업 소형특판 기업사원증 구비 여부(단위 : 명, %) >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형특판 가입자	53,516	4,339	9,594	11,272	12,660	14,211	1,440
사원증 미구비 건 (비율, %)	45,592 (85.2)	4,339 (100.0)	8,514 (88.7)	9,438 (83.7)	9,161 (72.4)	12,700 (89.4)	1,440 (100.0)

* 피심인 증빙 결과 제출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단말기유통법은 제4조 제4항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5항에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9조제3항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15조제2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15조(과징금)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판단

- 피심인의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심인은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피심인 관련 56개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피심인의 법인영업 부서가 소매월경 판매 개연성이 높은 소형특판 영업 대리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개인영업 부문보다 높게 지급하여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이용약관 신설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영업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소매월경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용약관 신설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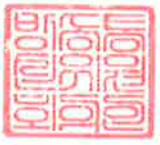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영업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피심인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가” 및 “나”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i)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ii)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iii)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다지원금 지급행위 및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 이상

라. 업무처리절차 개선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점 및 판매점이 과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인영업 조직의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매월경 판매 등을 통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호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신규 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지난 ①'14. 12. 4.(이른바 '아이폰6 대란' 관련)과 ②'15. 9. 9.(다단계 판매 관련)에 과다지원금 지급 행위 및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3회째 반복되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16. 10. 31.부터 '16. 11. 9.까지 (10일간) 피심인 본사의 법인영업 및 법인영업대리점의 영업에 대하여 번호이동을 포함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는 신규가입 관련 제안서 제출 등 예약가입자 모집, 가입신청서 접수,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 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알뜰폰사업자의 신규 가입은 예외)를 포함한다.

바.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

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가. 기준금액

- 피심인의 관련 56개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한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에 위반되고, 피심인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인영업 부서가 소매월경 판매 개연성이 높은 소형특판 영업 대리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개인영업 부문보다 높게 지급하여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따라서 단말기유통법 제9조3항, 제15조 제1 내지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피심인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40,020,585,970원이다.

피심인의 법인영업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53,516명×86.6%) × 평균가입기간(21.9개월) × 가입자당월평균수익(39,431원) = 40,020,585,970원

-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위반율이 86.6%임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범위 내에서 3.8%로 정한다.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부과기준율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 이에 따라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위 관련매출액(40,020,585,090원)에 3.8%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15억 2,000만원(백만원 이하 절사)이다.

나. 필수적 가중

필수적 가중은 해당 사항 없다.

다. 추가적 가중

피심인 본사에서 '16. 6. 1. ~ 6. 2. 동안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위원회로부터 '16. 7. 8. 피심인은 750만원, 법무담당 은 500만원, 공정경쟁담당 은 500만원, 기업모바일정책 은 500만원의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사실조사 중 피심인에 의한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남에 따라 '고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4]'에 의해 기준과징금(15억 2,000만원)에 20%(3억원, 백만원 이하 절사)를 가중한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18억 2,000만원(15억 2,000만원 + 3억원, 백만원 이하 절사)이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 원 장 최 성 준



부위원장 김 재 홍



위 원 김 석 진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